

예산총칙

2022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88,445,343	14,653,360
일반회계	434,554,662	13,036,640
특별회계	53,890,681	1,616,720
기타특별회계	53,890,681	1,616,720
상수도사업특별회계	15,331,049	459,931
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	27,239,074	817,172
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	550,571	16,517
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	235,338	7,060
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	5,009,857	150,296
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	5,524,792	165,744

제 2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'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'와 같다.

제 3 조 2022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'해당없음'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'계속비사업조서'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'해당없음'으로 한다.

제 6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11,286,286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의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3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